

기업환경주의와 환경교육의 역할

곽 일 천(한국환경기술개발원 책임연구원)

I.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기업경영

근래에 들어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여러 모임에서나 학계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역할은 최근 국가정책의 최우선 분야중 하나인 국가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혹자는 국가경쟁력 배양을 위해 기업에게 환경개선의 부담을 덜어 주거나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지구환경 보호 움직임의 세계화 추세를 이해한다면 매우 뒤떨어진 생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 필요성은 국내적인 삶의 질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점차 구체화 되어 가는 환경문제의 국제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수출국에 자국과 같은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한 생산방식을 요구하거나 국제적 측면 환경기준의 설정 등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더욱 꾀부에 와닿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녹색 소비주의'의 확산이다 (Tasaday, 1991). 환경 친화적 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시민의식이 환경보호를 사회적 책임

차원뿐 아니라 중요한 판매전략의 한 요소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도 일고 있는 기업의 녹색 이미지 제고 노력이나 그런상품 개발 노력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제 기업의 환경보호는 단순한 추가비용 지급이라는 성격보다 기업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움직임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생산공정방식(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규제의 등장이다(Chakarian, 1994). 이에 따라 기존의 사후처리 중심 환경기술 개념에서 고부가가치 에너지 절약형 생산공정으로의 전환과 전주기적 환경관리 도입으로 기업의 환경보호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환경보호 회사를 목표로 일찍이 기업환경주의를 실천한 코닥은 최근 생산이 50% 이상 늘어난 반면 생산물량 에너지 소비량은 40%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과 환경 모두에 이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녹색 이미지로 판매 제고에도 기여했다(Poduska and Forbes, 1992).

코닥은 필름 제조에 쓰이는 유기용제, 염화불화탄소(CFC·일명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불이고, 거래현상소로부터 용제를 회수해 재활용 하며, 폐카메라를 거둬들여 부품을 다시 사용

하고 있다.

유럽의 폴크스바겐, BMW 등 우수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총량의 70~75%의 재사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 재사용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현재 일본 기업은 총투자비의 10%를 환경부문에 투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화학산업이 총투자액의 19%를, 철강·기계분야는 7%를 환경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뒤풍이 싱가포르에 세운 '뒤풍 스판덱스 공장'은 총투자비의 30%를 환경부품에 쓰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 환경투자는 총투자액의 2% 안팎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투자의 내용도 선진국은 대체물질 등 환경기술개발, 재활용 시스템 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기존 환경설비의 유지·보수와 신규 설비 도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기업환경주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이윤의 창출 기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물론 기업의 환경투자가 곧바로 이윤으로 환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과 산업에 따라 투자회수기간은 빠른 속도로 단축될 것이다(곽일천, 1993).

II. 무역규제의 논리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우리 기업들은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최근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은 기업환경주의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이유로한 무역규제의 근거 및 수단의 유형 등을 살펴보아 기업환경주의의 내용 및 그 중요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환경보전을 이유로한 무역규제의 근거는 국가간의 서로 다른 환경규제 및 관련정책이 무역상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서 출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가 비효율적으로 낮은 국가의 산업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수준보다 낮은 오염통제비용(pollution control costs)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암묵적인 보조(implicit subsidy)를 받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러한 국가 산업의 수출은 환경비용이 외부화되어 있어 일종의 덤핑(eco-dumping)에 해당되므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경쟁력 상실로 인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환경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무역규제는 국내 환경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즉, 환경기준이 높은 국가의 산업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비용지출로 산업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국가의 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은 국내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불의도를 하락시키게 되므로 국내 환경정책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논의는 일반적 원칙의 수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환경 라운드)의 필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협상을 통한 원칙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을 통해 GATT 규범에 버금가는 국제환경규범이 형성될 때까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규제(unilateral trade measures)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내환경정책과 관련된 GATT 규정은 ①국경조정에 관한 기본규정(Basic Rules on Border Adjustment(제1,3조)), ②공공정책 예외조항(Public Policy Exceptions(제20조 : b,g)), ③기준 코드(the Standards Code), ④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규정(the Rules on Dumping and Subsidies)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GATT는 순수한 국내환경정책의 추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경제기획원, 1993)

① 국경조정에 관한 기본규정(Basic Rules on Border Adjustment : 제1,3조)

- 제1조(최혜국 원칙 : MFN(Most-Favored-Nation) Principle) : 수입의 모든 원천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제3조(자국민 대우 : National Treatment) : 모든 수입품은 국내생산품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됨(국내/해외 비차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품에 부과된 세금(간접세)은 국경조정(border adjustment)이 가능하며, 투입물이 물리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경우 투입물에 대한 간접세도 이에 해당된다.

생산 외부효과를 바로잡기 위해 제품에 관련된 환경세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비용이 경쟁력에 주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입국 정부는 국내 환경정화를 위해 사용할 'imports pay'를 마련하게 되나 수출자에게는 환경비용이 국내와 수출 대상국에서 이중부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② 공공정책 예외조항(Public Policy Exceptions : 제20조 : b,g)

GATT 규정에서는 공공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기본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보다 덜 왜곡된 정책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음이 증명되었을 경우 무역수단이 차선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0조하에서 정당화되는 국내환경정책의 Criteria는 첫째, (공공정책분야 내에서) 정의된 범위에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 필요, 혹은 가능한 대안 중 무역을 가장 덜 왜곡시키는 대안이거나 고갈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계되었을 때에 한한다(그 증명의무는 제소국가에 있음). 셋째, 상대국에 대해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정과 생산방법(PPM)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PPM을 포함하는 수단들이 많은 국가에서 계획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다.

PPM에 관련된 무역조치는 한 나라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것으로 효율성 문제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많은 환경문제는 빈곤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무역제한은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상계관세의 부과 등으로 개도국이 수출수입을 빼앗기면 환경문제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③ 기준 코드(Standards Code)

기준 코드는 각국의 상이한 기준이 비관세무역장벽(NTB)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경라운드에서 협상된 표준화된 기준이다. 제품기준의 조화는 기준에 대한 추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각국의 제품기준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잠재성을 감소시킨다.

④ 덤팅과 보조금에 관한 규정(the Rules on Dumping and Subsidies)

(i) Eco-Dumping

비효율적인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산업 생산물은 환경비용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일종의 덤팅(환경덤팅)에 해당하므로 덤팅에 관한 GATT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수출자가 특정한 환경정책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각 국가의 환경흡수능력, 환경오염에 대한 인내의도, 오염감소비용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 되므로 효율성,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조화'된 기준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시에는 실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ii) 보조금

GATT는 환경정책의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환경적 수단의 결여는 많은 환경집단들에 의해 암목적인, 상계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GATT가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에 근거한 상계판세의 부과를 허용할 것인가는 논쟁중에 있다.

III. 기술장벽의 현황

기업경영에 있어 피부에 와닿는 규제로서 기술장벽을 끊을 수 있겠다.

기술장벽이란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판정절차 등을 채택·적용 하므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등을 말한다. 이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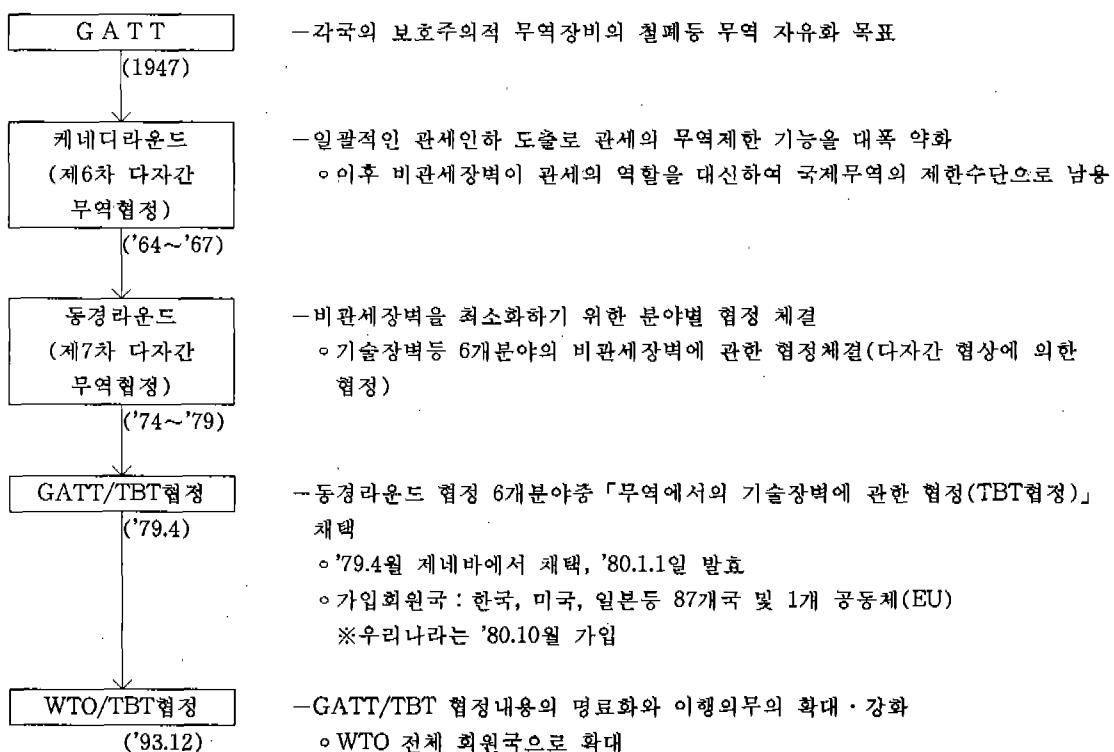
- 표준 : 적법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사용이 공통적·반복적이며 강제적이 아닌 문서로서 규칙·지침 또는 물품의 특성, 공정등을 나타내는 문서

- 기술규정 :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면서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적합판정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절차 등으로 나타날수 있다 (환경처, 1994).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지금껏 GATT를 중심으로 무역상 기술장벽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그림 1).

〈그림 1〉 기술장벽에 관한 논의



UR로 일반적 기술장벽은 점차 제거되어 가는 추세인 반면, 환경 및 보건, 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장벽은 최근들어 오히려 높아 가는 실정이다.

GATT中 환경과 무역의 연계고리는 20조의 일반적 예의조항 및 25조의 Waiver조항이다. 그러나, GATT의 유일한 제재 수단은 '보복 조치'밖에 없으므로 능동적인 환경보호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장벽이 환경보호그룹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더욱이, 기술장벽으로 대표되는 비관세장벽(NT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입국의 정부 및 수입대체산업체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 GATT의 관세인하 협상 확대로 관세의 보호장벽 기능 감소
- 관세에 비해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더 뚜렷함.
- 관세처럼 결과적인 혜택의 귀속이 반드시 수입국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교역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줄일 수 있음.
- 정부의 재량권한 영역이 늘어남.

선진 각국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합의가 곤란한 GATT, UNCTAD등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 규제입법 강화에 의존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쌍무적(bilateral)인 협상이 주가 되리라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WTO에서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환경기술의 상향평준화, 표준화를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

비관세장벽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는, 생물자원 획득과정에 대해서는 PPM 규제가 적용이 정당하며 GATT 20조, 표준협정, 던켈초안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예 NAFTA와 GATT간의 Tuna-Dolphin case), 조화(harmonization) 논쟁의 핵심인 'sound science'가 존재치 않으므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가 가능하며, 개도국이 자유무역에 대해 유예 기간을 얻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수입국의 환경의 최소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원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GATT 19조와 같은 원리)

(TBT 협정 중 환경관련 예외조항)

- * preface : 환경과 안보관련 예외 인정
- * 2. 2 : 국가 안보, 기만적 행위 예방,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의 보호를 위할 때
- * 2.10 : 안전, 건강, 환경, 안보와 관련된 긴급 문제(urgent problems) 발생 시
- * 5. 4 : 일치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예외
 - # 국가 안보
 - # 기만적 행위 방지
 - #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의 보호'
 - # 근본적인(fundamental) 기후적, 지리적 요인
 - # 근본적인(fundamental) 기술적, 기반시설적 요인
- * 5. 7 : 상술한 긴급문제의 발생시 예외적 절차 인정
- * 12. 4 : 개도국의 토착(indigenous) 기술, 토착 생산 방법 및 공정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한(certain) 기술 규제, 표준, 일치성 평가를 제정할 수도 있음.
- * 12. 7 : 개도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 차동적 대우 인정.
- * 12. 9 : 개도국의 특정 곤란 분야. 특정 필요 존재시 예외 인정.

• 국제환경관리기준 표준화제도 노력은 기업에게 있어 주목할만한 기술장벽의 사례가 될 것이다.(성극제, 1992)

환경전략자문그룹(SAGE; Strategic Advisory Group for Environment)은 1993년 1월 기술위원회(TC 207)를 설치키로 하고 동년 6월

캐나다에서 가진 창립총회에서 국제환경관리표준을 “ISO-14000 Series”로 명명하였는데, ISO가 추진중인 이러한 국제환경관리기준 표준화제도(ISO-14000 Series)는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켜야 할 환경기준의 표준화 작업으로서, 기업의 환경보호책임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환경보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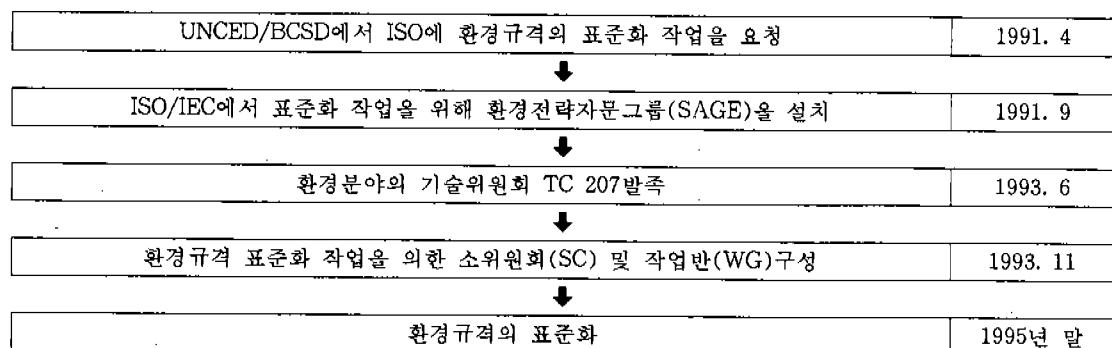
적용대상은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연구개발, 원료채취, 생산, 유통·판매, 폐기·처리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데, ISO-14000 Series가 마련되면 국가별로 또는 각종

협약별로 상충되는 관련규정을 통일하여 기업에게는 국제거래의 단일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ISO는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표준화를 추진하므로 GATT도 이 점을 존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선진국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 ISO의 환경표준화 작업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공업진흥청, 1993)(그림 2).

〈그림 2〉 ISO 환경표준화 작업



• 기술위원회(ISO/TC 207)의 환경관리표준화대상(환경관리규격)은 다음과 같다.

- ① SC1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환경관리체계)
환경정책, 목적, 방침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
- ② SC2 : Environmental Auditing; EA(환경감사)
환경영향을 관리, 통제하는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여 감사요소, 절차 및 감사자를 규정
- ③ SC3 : Environmental Labelling; EL(환경라벨링)

상품별 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광고 기준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증명 방법 등을 규정

- ④ SC4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EPE(환경성능평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환경영향 관련 제요소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 방법을 규정
- ⑤ SC5 : Life Cycle Analysis; LCA(수명주기 분석)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 제품 설계 지침을 규정
- ⑥ SC6 : Terms and Definition; T & D(용어)

및 정의)

환경 관리 내 용어와 정의에 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설정

⑦ WG1 :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 EAPS(제품기준의 환경적 고려사항)

제품 표준 제정 시 고려해야 할 환경적 합성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V. 기업환경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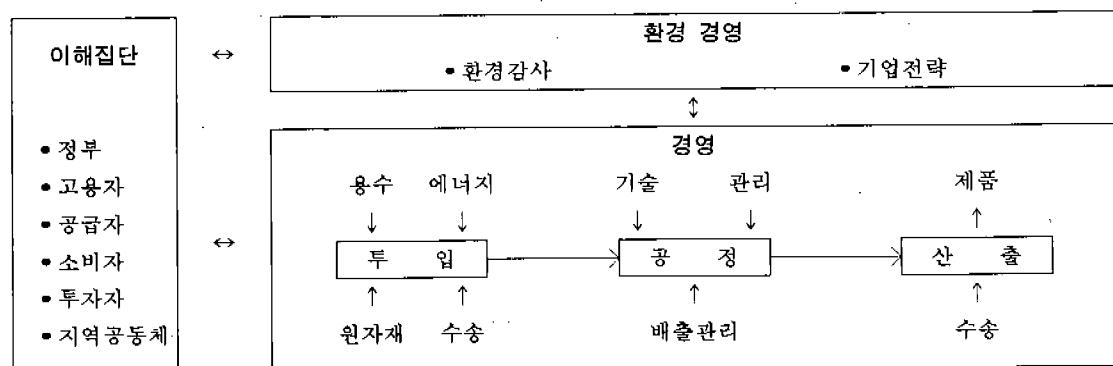
환경을 이유로 한 각종 부역장벽,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환경마인드 확산은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요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여건의 변화는 환경오염의 '외부성이 내재화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기업이 기존에 간과하던 부분이 새로운 경영여건으로 부각됨을 의미한다.

기업에 가해지는 환경적인 압력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체는 정부, 소비자와 공급자, 투자자, 지역공동체, 인력 등으로 볼 수 있다(그림 3).

- 환경 법규와 이행(enforcement)의 강화
- 오염통제, 폐기물처리, 오염처리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
- 공급, 소비 그리고 최종, 중간생산물의 처리로부터의 상업적 압력 증가
- 추가적인 정보의 필요성과 함께 훈련과 인력 필요 증가
- 기업의 환경적 성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공동체와 인력(work force)의 기대증가

〈그림 3〉 기업에 대한 환경적 압력



자료 : ECOTEC, 1991

그런데 기업들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영여건의 변화를 위협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규제에의 대응이나 오염의 발생에 대한 단편적이고 사후적 인 대처에 치중하여 왔다. 최근 들어, 몇몇 선도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경오염 문제에의 대응에 기업활동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장기회, 환경관련 기술개발 등의 R & D 기회, 환경오염의 급격한 감소를 달성하여 배출규제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요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는 기본적 대응

양식은 변화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흡수하려는 소극적(reactive) 접근방법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경쟁적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적극적(proactive)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표 1〉 환경에 대한 기업의 태도

| 구 분 | 소극적 대응 | 적극적 대응 |
|---------------|--|---|
|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태도 | 위협요인으로 인식 | 기회요인으로 인식 |
|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 | 보다 덜 긴급하며 중요도가 높지 않음 | 매우 긴급하며 중요도가 높음 |
| 대응목표 |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 |
| 대응차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규제의 준수 • 국제규제의 준수 • 환경선도기업을 추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차별화 • 환경선도 •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용 • 기업 이미지 제고 |
|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지출 | 생산량 증대에 도움을 주지 않는 추가적 원가부담 |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 |

또한 기업 환경전략의 대응영역은 공정, 제품, 외부라는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대응은 생산단계의 특성에 대한 대응을 말하며, 제품 대응은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을 말하고, 외부 대응은 기

업의 상업적인 가치사슬(commercial chain)과 관련이 없는 일반대중 혹은 규제자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 환경전략의 개념적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2).

〈표 2〉 환경전략의 개념적 체계

| 방식 | 기 존 사 업 | | | 신규사업 |
|-----|----------|---------------|-------------------|----------------|
| | 공 정 | 제 품 | 외 부 | |
| 소극적 | 배출규제의 준수 | 제품환경규격 준수 | 제도적 불이익의 최소화 | |
| 적극적 | 공정배출의 감소 | 제품의 환경 친화성 증대 | 환경이미지 제고 규제수준의 선취 | 새로운 환경산업으로의 진출 |

기업의 적극적 대응전략은 환경오염 문제를 추가적인 비용부담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당면한 상황을 이용하여 효율적

상과 비용절감의 기회 혹은 수익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문제가 기업에게 새로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하겠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환경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표 3).

성공적인 기업환경프로그램의 필수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표 4).

〈표 3〉 기업환경주의의 사례

| 회사명 | 업종 | 환경경영체계 | 추진실적 |
|------------------------|----------|--|---|
| 미국 Dupont | 종합 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책임주의 천명 • 환경위원회 설치 • 환경 관리 항목의 인사고과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C 대체물질 개발 및 CFC 생산중단 • 폴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 • 환경우수포장상 수상 |
| 미국 IBM | 컴퓨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환경영영방침 선언 • 환경위원회 설치 • 규제이상의 자체기준, 오염방지노력, 환경정보 공개, 자체 환경감사 등을 원칙으로 함. • 3R운동 전개 : Reducing Reusing, Recycl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까지 CFC 사용 완전 중단 • 중고컴퓨터의 회수 • 사무실내 종이 재활용 프로그램 |
| 미국 Eastman Kodak | 필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 책임주의 : 환경보호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목표로 설정 • 환경보전책임간부위원회 운영 및 환경지침 공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제조시 유기용제 삽감, 순수 세정방식 도입 및 CFC 사용 삽감 • 거래 현상소로부터 용제회수, 재활용 • 폐카메라의 회수 및 부품 재사용 |
| 영국 ICI | 종합 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속에서의 조화롭고 안전한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C 대체 선도 • 저공해상품개발 선도 : 자동차용 수성 도료 개발, 미생물 분해 폴라스틱, 생물학적 효소, 배합사료 등 • 생산공정의 환경친화적 개량 • 환경투자의 획기적 증대 |
| 스웨덴 Volvo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보호 지침 : 우수한 제품환경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공정, 환경분야 연구개발의 적극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내구성 증진으로 자원 에너지 절감 달성 •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 • 수성도료의 채용 |

자료 : Dillon et al, 1993.

〈표 4〉 기업환경프로그램의 필수요소

| | 주요인자 | 설명 |
|------------|----------------------------|---|
| Set Vision | Clear Vision 기업전략과 프로그램 | 모든 활동에 대한 기본원리와 정책 제시 만들고자하는 환경상 그리기 |
| 청사진 만들기 | 계획과정 조직적 구조와 책임 | 환경문제를 모든 계획과정에 포함 (예 : 투자사업, 시장전략, R & D) 기업문화와 환경목표 일치 |

| | 주 요 인 자 | 설 명 |
|------------|------------|---------------------------------|
| 지속적인 개선 | 이행 | 환경 목표를 이루기 위한 관리와 노력 |
| | 보상과 승인 | 이행 정도에 따라 개인과 팀에 대하여 보상 |
| | 전략프로그램 | 위해성 관리, 법적 규제와 같은 우선 과제에 중점을 노력 |
| | 교육과 관리기술개발 | 환경에 대한 인식증가 |
| | 정보관리 | 관련자료의 이용기술과 결정작성능력 배양 |
| | 관리기술의 개선 | 이행을 위하여 내부장벽 완화 |

기업환경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는 EOA(Environmental Option Assessment)와 같은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다.

EOA는 상품전주기관리(Subsystem Life cycle management)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이다(그림 4, 5). EOA의 방법론은 환경적 이익(Environmental Yield)과 경제적 피해(Economic impact)의 두 축 사이에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환경전문가 보다는 일반 관리인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절차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 정부, 환경기관의 이해

관계인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녹색상품 시장전략의 도입을 통해 기업환경주의를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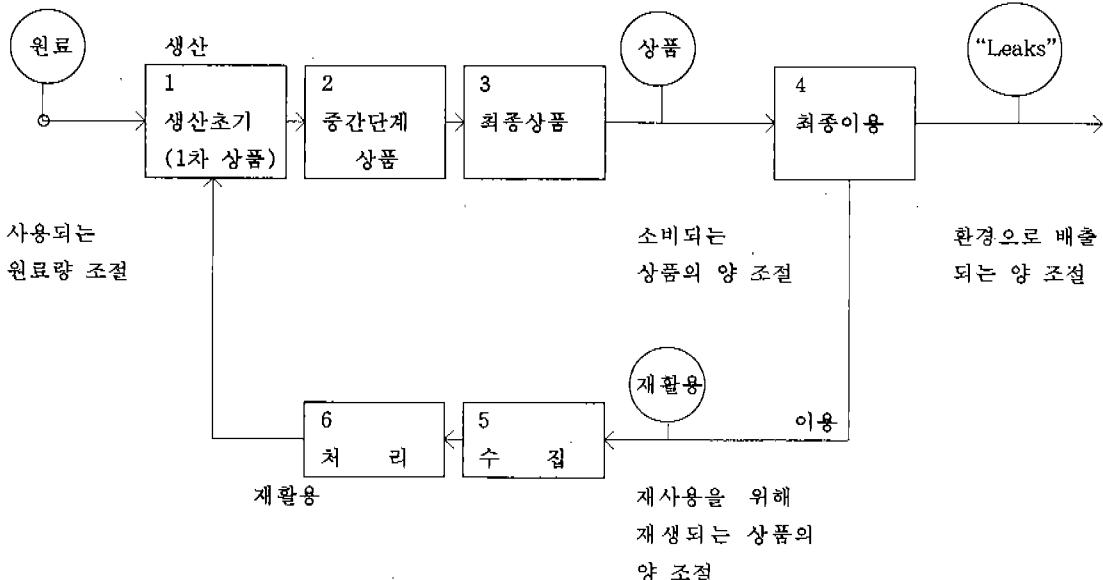
녹색상품의 요건으로는;

– 적은 원료사용, 재활용 증가(aluminum c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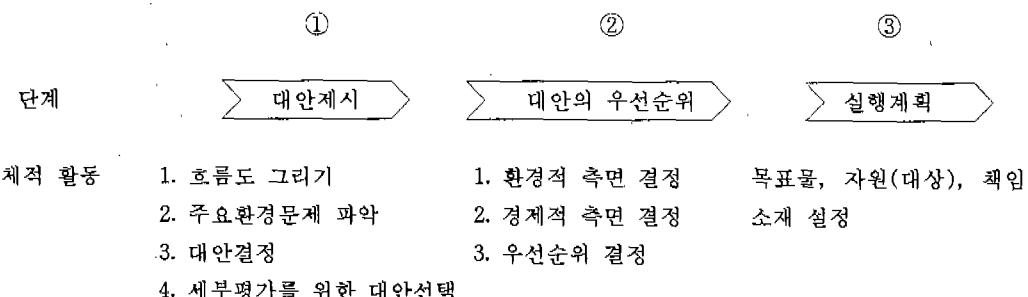
–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조/무독성 (CFCs, de-inking solvents, etc.)

– 불필요한 동물테스트 없애기(cosmetics)

〈그림 4〉 상품의 전주기 관리



〈그림 5〉 EOA 방법론의 단계



자료 : Winsemius et al, 1992.

- 보호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dolphino-free tuna)
 - 생산/사용/처분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이 적은 것
 - 부피가 작고 포장이 되지 않은 것
 - 가능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음료용기, 세제병)
 - 내구성이 있는 것
 - 수瘠, 해체가 용이한 것
 - 재생가능한 것
- 등이며 녹색이미지의 구축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녹색상품의 생산은 기업환경주의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V. 기업환경주의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

국제화시대의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환경주의의 실천은 새로운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환경주의는 단순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나 기업의 그린이미지 제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기업경영의 전제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 및 실천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Schmidheiny, 1992).

이를 위하여는 기업내에 환경프로그램과 담당조직 및 인력 등의 배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와 함께 기업 구성원의 “그린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절대적일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기업 구성원의 환경교육을 지적하는 것이다. 기업환경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은 첫째 환경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와 자료의 접근을 확대하는 전에서 출발해야 하겠다. 지속적인 혁신학습 기회나 환경관련 인사들의 초청강연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겠다.

둘째로는 기존의 환경보호의 범위나 접근에서 보다 확대되고 근원적인 단계로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환경관리가 기업활동의 전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관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다. 예컨데 환경회계 감사 제도의 도입이나 EOA 등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각 기업고유의 환경문제 발생등의 특성에 맞는 실천계획 점검표 활용 등이 생각될 수 있겠다.

셋째로는 기업환경주의가 기업에 어떻게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O'Riordan, 1987). 이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계산이나 그 산출기간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가치판단 및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 투자

등이 가져다 줄 이득의 계산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한 기업의 이윤이 되는지를 새로이 인식시켜 줄 때만이 기업환경주의는 그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조뿐 아니라 마케팅의 차원에서 그치는 기업의 환경보호가 되지 않고 기업의 체질화한 환경보호를 위하여는 3P(Pollution Prevention Pays Back) 정신을 명확히 허해하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손익산출의 자세가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J. Chakarian, 1994, An Historical and Current perspective of the pronisopm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OECD Informal Workshop on Trade and Environment.
- P.S. Dillon and M.S. Baram, 1993, *Forces Shap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Product Stewardship in the private Sector*, pp. 329 ~341. Environmental Strategies for Industry(K.Fishe et al ed.).

- ECOTEC, 1991, The Black Country Environmental Initiative, Department of Environment, U.K. ECOTEC.
- R.Poduska and R.forbes, 1992,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Kodak's Response*, pp. 43~50,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 S. Schmidheiny, 1992, Changing Course: A Global Business Perspective 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 L. Tasaday, 1991, Shopping for a Better Environment.
- P. Winsemius and W. Hahn, 1992, *Environmental Action Assessment*, pp. 248~266.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 곽일천, 1993, 「산업의 선진화와 환경보전」, 대 한상공회의소.
- 경제기획원, 1993,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문」.
- 공업진흥청, 1993,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선진국의 환경장벽」.
- 성극제, 1992, 「표준 및 검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환경처, 1994, 「기술장벽의 현황과 대응방안」.